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 사회원상채권의 채무관계자 업무처리방안(안)

2016. 4.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회생지원부 법무팀

회생지원부	팀장 황동조	5252
(법무팀)	대리 문혜영	5254

# 시효완성채권의 채무관계자 업무처리방안(안)

## I 추진배경

- 구상권관리규정 제85조(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방법 마련
- 소멸시효 관리방안(법무팀-25, 2016.03.15) 시행 후 시효완성채권의 업무처리를 위한 후속조치 방안 수립
- 재단의 시효완성채권 증가 예상에 따른 관리필요성 증대

## II 구체적 처리방안

- 적용대상 : 채무관계자 전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업무처리 : 시효완성채권의 채무관계자가 아래에서 정한 채무부담액 이상을 상환한 경우 부점장 전결로 채무관계자의 규제조치(신용도판단정보등록 포함) 해제
  - 적용대상 채무관계자 및 채무부담액

적용대상 채무관계자	채무부담액
1. 주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에 준하는 자	-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
2.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의 합계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의 1/2
3. 주채무 연대보증인	- 당해인의 채무부담액의 1/2과 제2호에서 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
4. 어음법상 채무자(발행인, 보증인, 배서인)	- 어음금액(관련 대지급금 포함)
5. 손해행위취소 소송관련 가액배상판결 선고된 수익자 또는 전득자	- 가액배상금(관련 대지급금 포함) 다만,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타채권자와 경합될 경우 가액배상금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

주1) 개인기업의 연대보증인이 1인인 경우 연대보증인수를 2인으로 가정하여 채무부담액 산정

주2) 채무관계자가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또는 주채무 연대보증인인 경우 부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수에 1인을 추가한 것으로 가정하여 본인의 채무부담액 산정할 수 있음

- 채무관계자가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당해기업의 경영부실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점장 전결로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의 합계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의 1/2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채무 부담액의 일부 경감 할 수 있음
- 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채무감면요령」 제4장에서 정하는 분할상환 및 현가상환 적용
- 주채무자 및 주채무자에 준하는 자가 채무부담액을 상환하여 채무관계자 규제조치에서 해제되는 경우 여타 채무관계자에 대한 규제조치 해제
  - 다만,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규제 해제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 정보관리규약”에 의함

### Ⅲ 기대효과 및 시행일

#### □ 기대효과

- 시효완성채권의 적극적 관리를 통한 영업점 회수실적 증대 및 재단 자산건전성 향상
- 시효완성채권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기지원

#### □ 제도 시행(예정)일 : 2016.04.15(금). 끝.

√ 실무상 어려운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